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장 애 인 복 지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, 타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, 장애인 편의증진, 단체·협회 및 민원 요구 사항 등 반영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이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
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, 상이 3~7급 보훈대상자에 한해서는
장애인활동법상 신청자격 부여(안 제13조)
- 나.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기관등이 정보주체 동의 하에 온라인으로
장애인 수급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, 복지부가 그 요금감면 기관등에
서비스 제공 내역을 요청하여 장애인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
활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의2 및 제45조의2 제3항 신설)
- 다. 장애인 생업지원 제도 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·운영
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 ‘20세 이상’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
‘19세 이상’으로 하향 조정
- 라.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및 장애인 학대정보
시스템 구축·운영 규정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상이등급 3급 내지 7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55조를
적용한다.

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상이등급 3급 내지 7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55조를
적용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감면등을 위한 장애인 자격 확인 제공 등) ① 제17조제1항에 따
른 이용요금 감면을 제공하는 기관 또는 그 밖에 장애인에게 이용요금
감면이나 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 등(이하 “요금감면 기관등”
이라 한다)이 같은 조 제2항에 갈음하여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
지서비스 수급자격 확인(이하 “장애인 자격확인”이라 한다)을 보건복지
부장관에게 온라인으로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편의
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
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(복지정보공유플랫폼) 연계를 통하여 장애
인 자격확인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또는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자격확인을 제공받고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하여 그 서비스 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장애인 자격확인을 요청하는 요금감면 기관등은 장애인 자격확인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 내역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4. 서비스 내역을 제공받는 기관
5. 서비스 내역의 이용 목적
6.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 항목
7. 제공된 서비스 내역의 보유 및 이용 기간
8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
제2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20세”를 각각 “19세”로 한다.

제36조의7부터 제36조의11까지를 각각 제36조의8부터 제36조의12까지로 하고, 제36조의7 및 제36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7(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)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조회 등

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
2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
3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의 열람 및 발급
4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
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

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.

제36조의13(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19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피해장애인, 피해장애인의 보호자(친권자, 「민법」에 따른 후견인, 장애인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·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, 신고자·목격자에 관한 정보 관리
2. 장애인학대예방 및 방지 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
3. 피해장애인, 피해장애인의 보호자·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

신·구조문대비표

4. 장애인학대예방 및 방지,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·관리
 5. 장애인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관리
 6. 피해장애인, 피해장애인의 보호자·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
 7. 그 밖에 장애인학대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처리 범위, 방법,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- 제4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7조의2에 따라 장애인 자격확인을 제공받는 요금감면 기관등은 장애인 자격 확인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,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illegible]

1. 2. (생략)

<신설>

내지 7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55조를 적용한다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17조의2(감면등을 위한 장애인 자격 확인 제공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을 제공하는 기관 또는 그 밖에 장애인에게 이용요금 감면이나 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 등이 같은 조 제2항에 같음하여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수급자격 확인(이하 ‘장애인 자격확인’이라 한다)을 온라인으로 요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(복지정보공유플랫폼) 연계를 통해 장애인 자격확인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또는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자격 확인

을 제공받고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해 그 서비스를 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장애인 자격확인을 요청하는 요금 감면 기관등은 장애인 자격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 내역 제공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4. 서비스 내역을 제공받는 기관
5. 서비스 내역의 이용 목적
6.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 항목
7. 제공된 서비스 내역의 보유 및 이용 기간
8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
제27조(생업 지원) ① ② (생략)

제27조(생업 지원) ① 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
· 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
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
가할 수 있다.

1.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
장애인
2.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
세대주인 장애인

<신 설>

③ -----

-----.

1. 19세 -----

2. 19세 -----

제36조의7(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) 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
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
장은 법 제59조의7제7항에 따라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
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
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
수·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
수 있다.

1.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
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
발급
2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
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부터
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
발급

<신 설>

3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
등록표 등본·초본의 열람 및
발급

4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
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

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
아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

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
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
장·군수·구청장이 장애인권
익옹호기관의 장에게 발급 등을
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
면제한다.

제36조의13(장애인학대정보시스
템 구축 및 운영) ① 보건복지
부장관은 법 제59조의19제1항
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
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
수행할 수 있다.

1. 피해장애인, 피해장애인의 보
호자(친권자, 「민법」에 따른
후견인, 장애인을 보호·양육
·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
있는 사람 또는 업무·고용
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
보호·감독하는 사람을 말한

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, 신고자·목격자에 관한 정보 관리

2. 장애인학대예방 및 방지 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

3. 피해장애인, 피해장애인의 보호자·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

4. 장애인학대예방 및 방지,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·관리

5. 장애인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관리

6. 피해장애인, 피해장애인의 보호자·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

7. 그 밖에 장애인학대예방 및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처리 범위, 방법, 절차 및 그 밖

제4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 ①·② (생략)

<신 설>

제4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7조의2에 따라 장애인 자격 확인을 제공받는 요금감면 기관등은 장애인 자격 확인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,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282